

統一情勢分析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2004. 4

최의철(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임순희(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통 일 연 구 원

- 목 차 -

I. 문제 제기	1
II.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상황’ 결의안 채택	2
1. 결의안 채택 과정 및 배경	2
2. 주요 내용	4
3. 우리 정부의 입장: 표결 기권	5
III.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 의의 및 특징	7
1. 의의	7
2. 특징: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9
IV. 북한의 반응과 예상 대응	11
1. 대외적 반발	11
2. 결의안의 제한적 수용 가능성	12
V. 정책적 고려사항	13
1. 다자적 틀을 적극 활용	13
2. EU와의 협조체제 강화	14
3. 국내외 NGO들에 대한 적극 지원	14
<부록> 2004년 유엔인권위가 채택한 ‘북한인권상황결의’ 내용 ...	15

I. 문제 제기

- 유엔인권위원회(이하 유엔인권위)는 제59차 회의에서 ‘북한인권상황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결의안(이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이 결의안에 대한 북한당국의 협력 거부로 제60차 회의에서는 보다 강화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2004.4.15)하였음.
- 이러한 유엔인권위의 조치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매년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보고서가 유엔 총회와 유엔인권위 등 유엔 기구들에 배포되어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이 증대될 전망이다.
- 유엔의 조치에 대해 북한당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유엔의 압력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본 보고서는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배경과 의의,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 증대에 대한 북한 당국의 예상 대응 등을 분석하고 우리의 정책적 고려 사항을 제시하여 향후 대북인권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II.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상황’ 결의안 채택

1. 결의안 채택 과정 및 배경

가. 결의안 채택 과정

-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0차 유엔인권위(2004.3.15-4.23)는 유럽연합(EU)의 의장국인 아일랜드 주도로 작성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4.15)하였음.
 - 53개 위원국들 중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채택
 - 한국은 작년에는 불참하였으나 금년에는 기권
- 제59차 유엔인권위(2003)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유럽연합(EU)과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북한이 2003년 유엔인권위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EU의장국인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상황’ 결의안을 상정하였음.

나. 채택 배경

- (1)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대응
- 제59차 유엔인권위(2003)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유럽연합(EU)과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유엔 관계기구들은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을 북한이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함.¹⁾

- 2004년 2월 4일 북한당국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북한결의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 2003년 5월과 9월에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방문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북한당국의 회신이 없었음.
- 2002년 10월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한 권리증진 특별보고관, 2002년 7월 종교적 관용 특별보고관 등의 방북 요청 등에 회답을 앓는 등 유엔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는 유엔인권위의 강력한 대응을 초래함.

(2) 국제 NGO들의 대유엔 로비 강화

- 2004년 3월 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폐막된 제5차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 국제 NGO 대표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탈북자 보호 문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지 및 미국 의회에 상정된 북한 자유법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였음.
 - 특히 EU가 제안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조치를 촉구함.
- 국제인권단체인 ‘주빌리 캠페인’, 국제헬싱키인권연맹과 국내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운동연합 등은 유엔인권위에서 발언권을 얻어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난민 지위 획득과 강제송환 반대 등 중국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함.

1)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mmission on Human Rights (E/CN.4/2004/31) 17 February 2004,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Noted by the secretariat.

2. 주요 내용

○ 금년도 결의안은 작년의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을 거의 모두 유지하고 있으나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for DPRK)을 임명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압력이 강화되었음.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과 함께 작년 결의안에서 요청한 주제별 특별보고관들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요청하고,
- 이와 함께 부녀자 인신매매, 감옥 및 노동수용소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추가한 것이 특징으로,²⁾ 유엔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다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이번 결의는 지난해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및 개선사항을 명시하고 강도를 높인 한편, 북한이 인권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주목함.

○ 지난해 결의에 추가된 내용 및 수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전문과 13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된 이번 결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³⁾

- 불법적·자의적 구금, 북한이탈을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외국에서 송환되어 온 북한주민들에 대한 구금, 고문, 사형 등의 처벌부과와 감옥과 노동 수용소에서의 영아살해, 매춘 또는 강제 결혼을 위한 여성 인신매매, 인종적 동기에 의한 강제유산 및 특히 감옥과 노동교화소에서 일어나는 송환된 임신부에 대한 분만 후 영아 살해 등 조

2)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E/CN.4/2004/L.21) 및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Press Release, 15 April 2004, <http://www.unhchr.ch/hurricane/hurricane.nst/view01/D45BB29E34B83...>

3) 최의철, 임순희,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통일정세분석 2003-03) 참조.

직적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접근 제한 제거, 국제노동기구(ILO) 및 아동노동 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 조치에 관한 1930년 협약(제29호)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 조치에 관한 1999년 협약(제182호)에의 가입을 최우선 문제로 고려할 것.
-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을 포함한 주제별 보고관들과 인권옹호자들을 포함한 국제인권기구들과 제한 없이 협력할 것.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및 동 판무관실과 건설적 대화를 발전시킬 것.
-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을 유엔인권위 의장에게 요청하고, 또한 특별보고관의 임무완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함.
-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상황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제59차 유엔총회와 제61차 유엔인권위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3. 우리 정부의 입장: 표결 기권

○이번 제60차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표결과 관련, 우리 정부는 원칙적 기권(Principled Abstention)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Explanation of Vote: EOV)발언을 통해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힘.

- 정부는 표결에 불참하거나 단순 기권이 빚어낼 수 있는 국내외의 비판을 희석시키고 국제사회와 북한에게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는 효과를 기대함.

○제네바 대표부의 최혁 대사는 공개 발언을 통해 유엔인권위의 기권 표

결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한국 정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왔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음.
- 표결에 기권한 것이 결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남북관계의 협력과 대화가 궁극적으로 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 정부는 남북한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함.
- 또한 북한 당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강화할 것을 기대함.

○ 정부는 표결에서의 기권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향후 다자간 틀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점과 남북한 관계 개선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이러한 정부의 입장 표명은 대북인권정책의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북한의 인권문제는 보편적 원칙을 중요시 하고 유엔 등 다자간 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의 노력에 참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당국에 분명히 전달하는 효과가 있음.

- 향후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대북인권정책에 대해서 북한당국의 강력한 반발을 희석시키면서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한 발언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Ⅲ.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 의의 및 특징

1. 의의

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 지난해에 이은 제60차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심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임.
 -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보다 찬성이 1표, 기권이 2표 늘어난 반면 반대는 2표가 줄었으며,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요청 등 지난해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결의 채택

- 공동 발의국이 지난해보다 4개국 더 많은 42개국으로 증가하였음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점차 확산, 심화되고 있음을 뜻함.

- 두 해 연이은 결의안 채택과 결의 내용의 구체화 및 강화는 인권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 이번 결의를 통해 유엔인권위는 북한이 A규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북한이 일부 유엔회원국들과 인권문제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주제별 특별보고관들의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59차 유엔총회와 제61차 유엔인권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유엔인권위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최우선적 문제로 다룰 것을 결정

나. 유엔인권위원회의 영향력 강화

○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인권위의 권위는 절대적이나 활동상 장애 요인들이 존재함.

- 인권 침해 해당국들이 채택된 결의안 이행과 조사활동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고, 이를 강제할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키는 것이 어려움.
- 또한 유엔인권위의 결의안 채택 등 중요 사안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는 특정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인권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상황이 조성되고 있음.

- 유엔인권위의 결의안 채택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인권 침해국에 대해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거나 외교적으로 기피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 유엔인권위의 결정에 협조적인 국가는 경제적 지원 등을 얻을 수 있고,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적 활동에 있어 불편을 감수하도록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유엔인권위의 활동은 해당국들이 인권을 개선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냉전 종식과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과거보다 용이하고, 특히 EU,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협력하는 경우에 인권 침해국들에 대해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

○최근 국제사회는 인권규범을 준수하지 않거나 체계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참여를 배제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규범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인도적 개입을 단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음.

- 비록 일관성과 예측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인권 침해국에 대해서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국제사회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을 철회 또는 지연시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북한과 같이 경제난과 식량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경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에 유엔 활동에 대한 협조 거부는 국제적 고립 탈피와 김정일 정권의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인권이 배타적인 국가 주권사안이라는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북한과 같은 경우에 심각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2. 특징: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4)

4) ○특별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1235에 의해서 특정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매년 검토함으로써 인권압력을 가하고 인권개선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1967년에 채택되었고, 이러한 절차는 유엔 총회 결의안 2144에 의해 재확인됨.

- 1235절차에 의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s), 전문가 단체(Experts), 조사단(Ad Hoc Working Group) 및 여타 사절단(other envoy) 등은 유엔인권위 단독으로 또는 사무총장에게 이들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음.

○1970년대 국가별 특별보고관 임명은 칠레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인권 개선에 기여함.

- 유엔인권위원회는 1974년 특별조사단 구성을 결의, 1975년 5인의 특별조사단을 구성을 하였으나 칠레 정부의 협력 거부로 방문 조사를 거부당함.
- 그러나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위원회는 칠레정부에 계속 방문 조사 허용을 종용, 1978년 칠레 정부의 방문 조사 허용으로 유엔총회와 인권위에 보고서를 제출함.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으로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적 의제가 됨.

- 유엔인권위가 임명한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북한 인권 실태를 보다 체계적·객관적으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표부를 가지고 있는 중립적인 국가의 출신이 임명되어야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해지고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특별보고관은 북한 방문과 자유로운 조사 활동을 북한 당국에 요청할 수 있고, 객관적인 실태 조사와 정보 수집을 위해 가능한 모든 관계자를 만날 수 있음.
- 이번 결의안은 과거의 실패와 다르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에도 불구하고 작년 결의안에 의해 활동 중인 식량, 고문, 종교 등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조사 활동을 병행시킴으로써 북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이고 강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

○또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금년 가을에 열리는 제59차 유엔총회와 내년의 제61차 유엔인권위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북한 당국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 1979년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고(기존의 특별조사단은 해산) 매년 인권실태를 유엔총회와 인권위에 보고함.
 - 이후 국가별 특별보고관은 적도기니아, 1980년대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프가니스탄 등에 적용되었음.

IV. 북한의 반응과 예상 대응

1. 대외적 반발

○ 정성일 북한 대표는 북한은 주체사상에 따라 모든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인권위의 결의안 채택은 정치적이고 선택적인 것으로 인권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대북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힘.

- 이 결의안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고,
- EU가 인권보호를 논할 권리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EU 회원국들이 생존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고 차별이 극심하다고 반박⁵⁾

○ 나아가 진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유엔인권위가 정치화되고 선택적이고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 하면서 북한이 유엔인권위에 계속 남아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함.⁶⁾

- 정치적이라는 비판은 EU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편승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 EU 등 서방국들은 미국의 비합법적인 이라크 침략에 대해 언급이 없으면서 자의적으로 북한을 표적으로 하여 선택적인 공격을 하고 있으며,
- EU가 이라크 사태에 언급이 없는 것은 힘이 센 자에 말 한마디 못하는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공박하였음.

5) 앞의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Press Release, 15 April 2004, <http://www.unhchr.ch/hurricane/hurricane.nst/view01/D45BB29E34B83...> 참조.

6) 위의 글 참조.

○북한 당국은 이 결의안 채택에 대해 놀라지 않을 것이고 우리 제도를 건드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함.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 발표(2004.4.19)를 통해서 이번 결의는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주도하의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며 “본질에 있어서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의 산물”이고 “허위날조로 일관된 내정간섭적”인 것으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힘.⁷⁾

2. 결의안의 제한적 수용 가능성

○현재 북한당국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주제별 특별보고관들의 북한 방문이나 조사 활동을 허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과거 해당국들도 국가별 특별보고관 임명 초기에 비협조적이었으나 유엔 총회의 결의 등 외교적 압력이 지속되고 회원국들의 정치적 결의가 확고한 경우에는 국제적 기피 대상이 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유엔의 압력을 수용하였음.

○국제적 고립을 면하고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한 김정일 정권은 중장기적으로 인권에 대한 제한적인 문호개방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유엔의 지속적인 압력이 계속될 경우에 북한 당국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선택적·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7) 『조선통신』, 2004. 4. 20.

V. 정책적 고려사항

1. 다자적 틀을 적극 활용

- 국제적 사례에서도 인권문제는 쌍무적인 차원보다는 다자간 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어느 국가도 인권문제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으며,
 - 북한과도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음.

- 정부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주제별 특별보고관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함.
 - 유엔 인권 레짐과 국내외 NGO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수집된 정보와 증거 자료들을 제공
 - 우리 정부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유엔의 인도적 기구들과 협력하여 국제기구들이 제공하는 인권분야 기술협력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향후 유엔 등 다자간 틀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되는 경우에 우리 정부는 기권보다는 찬성 등으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 등 인권문제가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개방과 개혁이 자동적으로 인권 개선으로 연계된다는 기대보다는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

2. EU와의 협조체제 강화

- 북한 당국이 결의안 채택에서의 EU의 중심적 역할에 반발하고 있으나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해서 정치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EU와의 관계는 지속할 것이므로 EU와의 긴밀한 협조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우리 정부와 NGO들의 협력 방안을 모색함.
 - EU와 대북 인권정책 추진 방향, 진행사항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
 - 또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 부문에서 EU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

3. 국내외 NGO들에 대한 적극 지원

-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정부의 행동에 제약이 있는바, 이를 우회하는 방안으로 국내외 NGO들의 인권운동을 적극 지원함.
 - 이들의 연구 및 교육,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정보와 자료 제공 및 재정적 지원 강화
 - 북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

<부록> 2004년 유엔인권위가 채택한 '북한인권상황결의' 내용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The underlined parts indicate additions or revisions to last year's resolution.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Guided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nd other human rights instruments,

Reaffirming that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have the obligation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o implement the obligations they have assumed under applicable international instruments,

Mindful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calling its resolution 2003/10 of 16 April 2003,

Noting the submission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f its second periodic report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1990/6/Add.35), and its second periodic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65/Add.24), as a sign of more active engagement in international cooperative effort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encourag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to submit its reports in a timely manner,

Taking note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the reports submit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ressing its deep concern at the precarious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in particular the prevalence of infant malnutrition which, despite recent progress, still affects a significant percentage of children and their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Reaffirming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its entire population,

Underlining the importance of the effective continuation of the process of rapprochement between the two Koreas and noting progress in this respect,

Welcoming the fact tha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held consultations with some countries on human rights issues,

Desiring to promote a constructive approach leading to concrete progres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1. *Expresses its deep concern* about continuing reports of system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ublic executions, extra-judicial and arbitrary detention,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political reasons, the existence of a large number of prison camps and the extensive use of forced labour, and lack of respect for the rights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b) Sanctions on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have been repatriated from abroad, such as treating their departure as treason leading to punishment of internment, torture,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the death penalty, and infanticide in prison and labour camps;

(c) All-pervasive and seve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s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pinion and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on access of everyone to information, and limitations imposed on every person who wishes to move freely within the country and travel abroad;

(d) Continued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women, particularly the trafficking of women for prostitution or forced marriages, ethnically motivated forced abortions and infanticide, after labour-inducing injections or natural delivery by repatriated mothers, including in police detention centres and labour-training camps;

2. *Notes with regret* that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not created the necessary conditions to permi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examine these reports in an independent manner and calls upon the Government to address these reports and concerns in an open constructive manner, including:

(a) By providing all pertinent information concerning the above-mentioned issues and removing restrictions on access to the countr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 By ratifying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not yet a party,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by implement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namel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particular concerning the right of everyone to be free from hung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nsuring that all necessary measures are undertaken to this end;

(c) By adhering to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ur standards and considering as a matter of priority joining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d becoming party to the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1930 (Convention No.29) and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1999 (Convention No.182)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d) By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 By refraining from sanctioning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have moved to other countries and refraining from treating their departure as treason leading to punishments of internment,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the death penalty, and put an immediate end to maltreatment and infanticide in prison and labour camps;

(f) By cooperating with the United Nations system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cooperating without restriction with the thematic procedure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levant to the situ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question of torture,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nd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as well as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g) By developing a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her Office;

(h) By resolving, clearly and transparently and urgently, all the unresolved questions relating to the abduction of foreigners;

(i) By cooperating with its neighbouring Governments to bring an end to the trafficking of women;

3. *Urges*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at humanitarian organizations,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United Nations agencies, in particular the World Food Programme, have full, free, safe and unimpeded access to all par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order for them to ensure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is delivered impartially on the basis of need, in accordance with humanitarian principles;

4. *Reques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ntinue to urge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especially food aid, destined for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humanitarian principles and that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ctors are allowed to travel throughout the country to monitor this distribution, and to ensure the respect for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asylum;

5. *Requests*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after consultations within the Bureau, to appoint an individual of recognised international standing and expertise in

human rights a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6. Requests the Special Rapporteur to establish direct contact with the Government and with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rough visits to the country, and to investigate and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on the Government's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7. Also requests the Special Rapporteur, in carrying out this mandate to seek and receive credible and reliable information, including through visits to the country, from all relevant actors, including Governmen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ny other parties who have knowledge of these matters;

8. Calls upo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extend its full and unreserved cooperation to, and to assist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discharge of his/her mandate and, to this end, to take all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the Special Rapporteur has free and unlimited access to any pers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m he/she might wish to meet;

9.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give the Special Rapporteur all necessary assistance in the discharge of his/her mandate;

10. Requests the Special Rapporteur to report his/her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o the General Assembly at its fifty-ninth session and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t its sixty-first session;

11. Requests all the relevant Special Rapporteurs and Special Representatives to examine alleg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o report thereon to the Commission at its sixty-first session, and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give all necessary assistance to enable

the Special Rapporteurs and the Special Representatives to discharge their mandates fully, including through visits to the country;

12. *Requests*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engage in a comprehensive dialogue with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a view to establishing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to submit her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at its sixty-first session;

13. *Decides* to continue its consideration of this question at its sixty-first session under the same agenda item as a matter of high priority.

14. *Recommends* the following draft decision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 adaption: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aking note of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4/... of 15 April 2004, approves the request to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to appoint, after consultation with the Bureau, an individual of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ing and expertise in human rights a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establish direct contact with the Government and with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rough visits to the country, and to investigate and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to seek and receive credible and reliable information from all relevant actors. The Council further approves the request to the Secretary-General to give the Special Rapporteur all necessary assistance in the discharge of his/her mandate."